

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1. 10. 27.(수)

■ (농정 이슈) 2021.10.27. "농식품부" 보도자료

농관원!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

- 11월부터 유기질 비료업체 현장 점검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지자체와 협력하여 11월 중 490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업체 등 점검*

* 점검내용 : 불법원료 사용여부,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, 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

◆ 불량비료 피해예방 등을 위해 '불량비료 신고전화(1588-8112)' 운영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.

○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·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.

○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,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,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·사무소 담당직원 교육,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.

□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(490여 개)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

○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(전국 130개)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,

-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,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,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*한다.

* 비료관리법 및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등의 준수사항 점검

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1. 10. 27.(수)

○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,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'21.10월 기준 비료 생산·수입업 등록(Agrix 통계): 3,832개 업체, 10,912개 비료 종류

○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*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* 비료관리법 제19조,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에서 행정처분(영업정지, 제품회수 등)

□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'불량비료 신고전화(전국 어디서나 '1588-8112')'를 운영한다.

○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.

○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,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.